



2018

한세대학교

재외국민 모집요강

ipsi.hansei.ac.kr



지원자 유의사항

[기본사항]

- 본교는 제출서류 위·변조에 따른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자의 원서접수 완료를 학교생활 기록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의 온라인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학 전형의 성적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원서접수와 제출서류는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계열구분은 본교 모집단위의 계열기준입니다.(고등학교 이수계열/과정이 아님)
- 대입지원에서 부정행위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 무효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교 지원자는 전형 기간 중 항상 본교 홈페이지의 게시공고를 확인하고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본 모집요강의 모든 사항은 지원자에게 개별적으로 공지하지 않으므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학 후의 제반사항은 본교의 학칙에 따릅니다.
-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복수지원 관련사항]

- 수험생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최대 6회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재외국민 전형 등 정원 외 전형도 포함됨. 단, 부모 모두 외국인인 전형은 수시모집 지원횟수 6회 제한대상에서 제외함.)
- 6회 지원이란 수험생이 원서를 6번 접수하는 것을 말하며, 지원한 대학의 수와 관계없이 수시모집에서 지원한 모든 전형을 대상으로 하며, 동일한 대학에서 복수의 전형에 지원한 경우에도 별도의 전형에 각각 지원한 것으로 산정됩니다.
- 수시모집에서 6회를 초과하여 원서를 접수한 경우, 원서접수 시간 순서상 6회 이후의 접수는 지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산업대학, 전문대학,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은 수시모집 지원횟수 6회 제한에서 제외합니다.
※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 경찰대학교,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 포함)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중등록 금지]

- 모집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등록확인예치금 납부 포함)하여야 합니다.
- 수시모집 합격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만 등록 처리하며, 수시모집에 복수로 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등록확인예치금 납부기간 포함) 내에 최종적으로 1개 대학에만 등록(등록확인예치금 납부 포함)하여야 합니다.
- 충원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합니다.

※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합격·등록사항을 전산 검색하여 복수지원 또는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은 무효로 함.

[본교 지원 관련사항]

- 본교 수시모집의 각 전형유형 및 모집단위 간에는 복수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는 인터넷 접수만 실시하며 접수 완료(전형료 결제) 후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 본교 수시모집에서 지원자 미달, 미등록 또는 등록포기로 인하여 충원하지 못한 인원은 정시모집에 포함해서 선발합니다.
- **전형기간 중 수험생에게 알리는 공지사항이나 합격자 발표는 개별통지하지 않으며, 본교 홈페이지 및 입학 홈페이지에만 게시합니다.**
- 본교 지원 당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경우 합격 후 2017년 2월 28일까지 졸업하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단, 일본 등 3월 졸업국가는 2017년 3월 31일까지 졸업하여야 합니다.)
-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 또는 초과한 경우에도 본교에서 수학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교에 제출된 서류는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며, 추후 서류위조, 허위기재 등 부정확한 방법으로 합격(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한 후라도 합격(입학)이 취소되며,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된 경우 납부한 등록금은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외국어 졸업인증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서접수 관련사항]

- 원서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수시모집 6회 초과지원이 아닌 이상 지원취소, 전형관련 서류반환은 불가하며 전형료도 환불하지 않습니다.
- 대입 원서는 본인만 작성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학 입학 무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완료(전형료 결제) 후에는 전형료 환불 및 제출서류 반환이 불가하므로 모집요강에 명시된 지원 자격 및 전형방법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접수하여야 합니다.
- **지원자 또는 보호자 연락처, 이메일 주소, 전형료 환불계좌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입력사항이 잘못되었거나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입니다.**
- 원서접수 시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사진파일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3X4cm)은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용 사진이어야 합니다.
- 면접고사, 실기고사 일정은 절대 변경이 불가하오니 원서접수 전 전형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수험표는 정상적으로 접수된 경우에만 출력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 당일 18:00시까지 반드시 원서접수(전형료 결제 포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관련사항]

- 모든 서류의 제출의무는 수험생에게 있으며, 필수제출 서류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원서접수 취소와 전형료 환불은 일절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단, 공공기관의 FAX 민원에 의한 발급서류는 인정하며 원본제출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지원자가 본교 입학팀에서 원본 제시 후 사본에 '원본대조필'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FAX 민원서류의 판독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수험번호 및 성명을 모든 제출서류 우측 상단에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 시, 봉투겉면에는 바코드가 인쇄된 '발송용 봉투표지'를 반드시 출력하여 서류봉투에 부착하여 제출합니다.
- **제출 기한 내에 입력 및 제출하지 않은 서류와 자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제출서류 세부 목록은 각 전형별 안내사항에 따라 제출합니다.

Contents

HANSEI UNIVERSITY
2018 신입생 재외국민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5
2. 전형일정	6
3. 전형방법	7
4. 인터넷 원서접수	9
5. 전형기준	11
6. 합격자 발표 및 등록	12
7. 지원자격	14
8. 제출서류	18
9. 재외 한국학교 현황	21
10. 제출서류 서식	22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학 부	모집단위	입학정원	최대선발 가능인원	수 시 모집인원	정 시 모집인원	외국의 전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신학부	신학과	25	2	10	수시모집 미충원시 선 발	[수시/정시] 입학정원 제한없음
	기독교교육·상담학과	23	2			
사 회 과학부	미디어광고학과	46	4			
	국제경영학과	56	5			
	경찰행정학과	22	2			
	국제관광학과	30	3			
국제언어 학부	영어통상통역학과	22	2			
	중국어학과	21	2			
I T 학부	전자소프트웨어학과	20	2			
	ICT디바이스학과	29	2			
	산업보안학과	25	2			
간호복지 학부	간호학과	33	3			
	사회복지학과	30	3			
예술 학부	음 악 학 과	피아노	50	5		
		성악				
		현악				
		관악				
	공연 예술 학과	작·편곡	29	2		
공연예술학						
디자인 학 부	시각정보디자인학과	35	3	-	1	[정시] 입학정원 제한없음
	실내건축디자인학과	35	3			
	섬유패션디자인학과	35	3			
합 계		566	11	10	1	

※ 음악학과와 공연예술학과의 전공별 선발인원은 지원인원 및 성적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2. 전형일정

HANSEI UNIVERSITY
2018 신입생 재외국민

■ 수시모집

구 분	일 시	비 고
원 서 접 수	2017. 9. 11(월) ~ 15(금) 18:00까지	인터넷 접수 (www.uwayapply.com)
제출서류 마감	2017. 9. 22(금) 17:00까지	우편 또는 방문 (마감일 우체국 발송날짜까지 유효)
실 기 고 사 음악학과 공연예술학과	2017. 10. 18(수) ~ 21(토) 09:00 ~	본교 음악관(홈페이지 게시)
면 접 고 사	2017. 10. 28(토) 10:00 ~	본교 고사장(홈페이지 게시)
합격자 발표	2017. 12. 7(목) 10:00	본교 홈페이지 게시 ※개별 통보하지 않음
등록확인예치금 납부	2017. 12. 25(월) ~ 28(목) 16:00까지	기업은행 및 전국은행
충원합격자 발표	2018. 1. 3(수) 21:00까지	본교 홈페이지 게시 ※개별 통보하지 않음
충원합격자 등록마감	2018. 1. 4(목) 16:00까지	기업은행 및 전국은행
최종등록(잔여등록금)	2018. 2. 7(수) ~ 9(금) 16:00까지	기업은행 및 전국은행

※ 전형일정은 지원자 현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시모집

구 분	일 시	비 고
원 서 접 수	2018. 1. 6(토) ~ 1. 9(화) 18:00까지	인터넷 접수 (www.uwayapply.com)
제출서류 마감	2018. 1. 16(화) 17:00까지	우편 또는 방문 (마감일 우체국 발송날짜까지 유효)
실 기 고 사 음악학과 공연예술학과	2018. 1. 15(월) ~ 18(목) 09:00 ~	본교 음악관(홈페이지 게시)
	디자인학부	
면 접 고 사	2018. 1. 18(목) 10:00 ~	본교 고사장(홈페이지 게시)
합격자 발표	2018. 2. 6(화) 14:00	본교 홈페이지 게시 ※개별 통보하지 않음
등록기간	2018. 2. 7(수) ~ 2. 9(금) 16:00까지	기업은행 및 전국은행
충원합격자 발표마감	2018. 2. 20(화) 21:00까지	개별통보(유선 또는 SMS)
충원합격자 등록마감	2018. 2. 21(수) 16:00까지	기업은행 및 전국은행

※ 전형일정은 지원자 현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전형방법

■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모집시기	모집단위	서류	면접고사	실기고사
수시/정시	아래 모집단위 제외한 모두	적합/부적합	100%	
수시/정시	음악학과 공연예술학과	시각정보디자인학과 실내건축디자인학과 섬유패션디자인학과	적합/부적합	100%

*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이 발생할 경우 정시모집으로 선발합니다.

■ 면접고사 및 실기고사

모집단위	고 사 내 용	
해당 모집단위 모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적합한 수준에서 출제 인성 및 신앙, 지원동기 및 학업계획, 전공적성 및 기초지식, 사회문제에 대한 이해 등 평가 공통적으로 표현력, 태도 등 평가 	
음악 학과	피아노	자유곡 2곡 (작곡자가 다른 빠른 곡)
	성악	아래 ①, ② 모두 ① 이탈리아 가사로 작곡된 가곡이나 아리아 중 1곡 ② 독일어 가사로 작곡된 가곡이나 아리아 중 1곡 ※ 아리아는 원어, 원조로 연주
	관현악	자유곡 1곡
공연 예술 학과	작·편곡	아래 ①, ②,③ 모두 ① 피아노 실기 : 자유곡 1곡(장르제한없음) ② 화성풀이 : 전통화성 전반 ③ 주어진 3마디 동기에 대하여 16마디 선율 작곡
	공연 예술학	아래 ①, ② 모두 ① 노래(1분 30초) : 자유곡(뮤지컬 삽입곡 중 택일, 한국어만 가능) ② 특기(1분) : 자유 안무(현대무용, 재즈댄스, 발레 등) 또는 연기 중 택 1 ※ MR, 의상, 소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이 준비해야 함(의자, 박스는 각 1개씩 고사장에 비치함) ※ MR은 고사 당일 CD(DVD파일제외) 또는 USB로 제출해야 함 ※ MR은 CD 및 USB에 문제가 있을시 사용불가하니 필히 확인 및 점검

모집단위	고 사 내 용	비고
시각정보디자인학과 실내건축디자인학과 섬유패션디자인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디자인 / 사과의 전환 / 발상과 표현 중 택일 실기고사 당일 주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제공 : 화지, 테이블, 의자 개인준비 : 평면도구 일체(물감, 파스텔, 색연필, 연필, 붓 등) ※ 정착액 사용 가능 ※ 형광물감 사용 불허

■ 각종 고사 관련

- 면접 및 실기고사의 일정은 개별 통보하지 않으며, 본교 홈페이지 및 입학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별 지정일시 및 장소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교 홈페이지 및 입학 홈페이지를 통하여 면접/실기고사 시간과 장소, 합격자(최초 합격자 및 총원 합격자) 등 입시와 관련된 사항을 발표할 시 수험생은 반드시 이를 조회하여야 하며, 조회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수험생에게 있습니다.**
- 각 전형유형 및 모집단위별로 해당되는 **각종 고사를 결시할 경우 전형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합니다.**
- 수험생은 반드시 입실완료시간까지 해당 고사장 또는 대기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지정된 면접고사, 실기고사 일정은 절대 변경이 불가하오니 원서접수 전 전형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각종 고사에는 반드시 수험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신분증을 분실한 사람은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또는 학생부에 사진을 부착하여 출신 고등학교장의 직인을 받아 지참), 지참하지 않은 수험생은 각종 고사응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든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한 후라도 합격(입학)을 취소하며,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된 경우 납부한 등록금은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 본교는 원서접수 대행업체를 통해 원서접수를 위탁처리 합니다.
 - 본교는 입학업무를 목적으로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입학 이후 개인정보는 학적업무 및 교육, 연구, 행정, 대학생활 및 정보 안내의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계열구분, 졸업연도, 출신학교, 휴대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형기간 중 연락처, 보호자관련 사항, 은행계좌번호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본교에서 입학업무를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따라 5년까지만 보유하고, 5년이 경과한 후에는 파기합니다.
 - 원서 접수 대행업체는 2018학년도 대학입학전형방법 위반자 관련 업무가 종료되는 시점에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지원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할 경우에는 원서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 본교에 2018학년도 재외국민모집 원서접수를 하는 것으로서 지원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고유 식별 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 본교는 입학업무를 목적으로 2018학년도 재외국민모집에 응시하는 지원자의 고유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 본교에 2018학년도 재외국민모집 원서접수를 하는 것으로서 지원자의 고유 식별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인터넷 원서접수

HANSEI UNIVERSITY
2018 신입생 재외국민

■ 절차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접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교 입학홈페이지(ipsi.hansei.ac.kr)의 “수시/정시모집 원서접수” 배너 Click• 유웨이어플라이(www.uwayapply.com)에 직접 접속
회원가입(로그인) 후 한세대학교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원가입 시 반드시 지원자 본인의 명의로 가입
원서접수 유의사항 숙지 및 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원서접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관련 동의서 확인
원서 작성 (사진 첨부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 인적사항, 연락처, 지원 전형유형, 모집단위 등 기입• 누락, 오기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사진은 최근 3개월 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파일(jpg,gif) upload
원서 작성내용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형료 결제 전 반드시 최종 작성 내용 확인• 인터넷 접수 완료(전형료 결제) 후에는 변경 및 취소 불가
전형료 결제 (원서접수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형료 납부 : 신용카드결제, 계좌이체, 휴대폰결제 등
수험표 및 우편발송용 표지 출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험번호가 표기된 수험표 출력(면접고사 및 실기고사시 지참)• 우편발송용 표지 출력 : 제출서류 발송시 사용
제출서류 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형유형별 제출서류 발송• 기한 : [수시] 2017. 9. 22(금) 17:00까지 [정시] 2018. 1. 16(화) 17:00까지 (마감일 우체국 발송날짜까지 유효)

■ 원서접수 유의사항

- 원서 작성 후 반드시 전형료 결제를 마쳐야 접수가 완료되며, 원서접수 완료(전형료 결제) 후에는 접수 취소 및 입력사항 변경이 불가합니다.
- 본고는 제출서류 위·변조에 따른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자의 원서접수 완료를 학교생활기록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의 온라인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자기소개서(성김인재 전형)의 입력·수정기간은 제출서류 마감일까지이며 마감일 이후에는 입력 및 수정이 불가합니다.
- 원서접수 완료(전형료 결제) 후에는 전형료 환불 및 제출서류 반환이 불가하므로 모집요강에 명시된 지원 자격 및 전형방법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접수하여야 합니다.
- 면접고사, 실기고사 일정은 절대 변경이 불가하오니 원서접수 전 전형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 시 반드시 반명함판 사진(3×4cm)을 입학원서 사진란에 등재(upload)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최근 3개월 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정면 사진 파일(jpg, gif)을 스캐너 등을 이용하여 사전에 준비하여야 합니다.
※ 배경사진, 옆모습, 선글라스 착용 등의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기재 착오 및 누락, 오기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전형기간 중 입학원서에 기재된 연락처(주소 및 전화번호)는 항상 연락이 가능하여야 하며, 전형기간 중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본고 입학팀으로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변경 및 연락두절로 인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 2018년 2월 졸업예정자가 2018년 2월에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현역군인(공익근무요원, 전의경 포함)은 2018년 2월 28일 이전에 전역이 가능해야 지원할 수 있으니 확인 후 원서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료

면접고사 실시	실기고사 실시	북한이탈주민(새터민)
40,000원	70,000원	30,000원

-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는 본고가 부담합니다.
- 접수가 완료된 이후(전형료 결제 후)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형료를 납부한 이후 **천재지변, 질병(입원) 또는 수험생의 귀책이 아닌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형료환불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은 후 심의를 거쳐 해당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액(원서접수 수수료 공제)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복지급여 수급자, 특수교육대상자는 전형료 50% 감면
- **전형료 환불신청방법 : 원서접수 시 신청 및 해당 자격증빙서류(통장사본,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등) 업로드, 추후 확인 후 환불**
※ **접수기간 내 서류제출(업로드)하지 않은 경우 환불 불가**
- 본고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될 경우,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함. 전형료 반환은 2018년 4월 30일 이전 본고가 공지한 반환기간에 반환함.(원서접수 시 반환방법 선택 : 금융기관계좌이체 또는 학교직접방문)
※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함. 단,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전형료 반환 정보 기재 오류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반환대상자의 책임이므로, 이 경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전형기준

- 합격자는 모집인원을 모집단위별 제한인원 내에서 입학전형 총점 순으로 선발합니다.(모집단위별 최대 선발인원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입니다.)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외국의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은 정원 제한 없이 선발 가능합니다.
- 성적 산출 또는 지원 자격 확인 등 입학전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자격 미달(서류미비)자로 불합격 처리합니다.
- 성적 산출을 위한 계산식에는 소수점 둘째자리(셋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만 활용합니다.
- 면접고사 및 실기고사에 결시한 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 모집인원 유동제는 적용하지 않으며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본교 동점자 처리기준에 의해 선발합니다.

면접고사 실시	실기고사 실시
① 면접고사 성적우수자 ② 연소자	① 실기고사 성적우수자 ② 연소자

- 총장은 입학전형 성적이 현저하게 열등하거나 적절한 학력수준에 못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집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습니다.
- 수험생이 제출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기타 제출서류 등의 서류위조 또는 허위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되며 법률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전형유형별, 모집단위별로 정한 지원자격에 미달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입학전형 성적 및 심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입학원서 접수 후 지원 자격이 미달되는 경우 자격미달로 불합격 처리되며, 합격(입학)후 발견 시에도 합격(입학)이 취소됩니다.
- 기타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학칙 및 관련규정,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합격자 발표 및 등록

■ 합격자 발표

- 발표일시 및 발표방법

수시모집	정시모집	발표방법
2017. 12. 7(목) 10:00	2018. 2. 6(화) 14:00	본교 홈페이지에 게시

- 합격자는 본교 홈페이지 및 입학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
- **합격 여부를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합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합격여부를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합격자는 본교 홈페이지에서 합격자 유의사항, 합격증, 기타 입학관련 서류 등을 다운받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합격증은 지정된 출력기간 이후 출력 불가하므로 반드시 출력 또는 파일로 저장하여 보관하십시오.

■ 등록

모집시기		납부기간	고지서	납부방법
수시모집	등록확인예치금	2017. 12. 25(월) ~ 28(목) 16:00까지	본교 홈페이지에서 합격조회 후 출력	기업은행 및 전국은행
	최종등록(잔여등록금)	2018. 2. 7(수) ~ 2. 9(금) 16:00까지		
정시모집	등록	2018. 2. 7(수) ~ 2. 9(금) 16:00까지		

- **등록확인 예치금은 등록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며, 추후 확정된 등록금은 2018. 2. 7(수) ~ 2. 9(금) 16:00까지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최종등록을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별도의 통보 없이 미등록 불합격 처리됩니다.**
- 입학학기가 같은 2개 이상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 포함)에의 이중등록을 금지합니다. 등록은 반드시 하나의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 포함)에만 해야 합니다.
- **등록 및 등록금 납부는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충원합격자 발표

- 최초 합격자의 미등록, 환불 등으로 발생하는 충원 합격자는 최초 합격자 발표 시 발표한 해당 모집단위의 예비순위에 따라 선발합니다.
- 충원합격자 발표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충원합격 통보를 받은 자는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충원합격자는 본교 홈페이지에서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지정일시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발표합니다.**
- 입학원서에 기재한 연락처 기재 오류나 부재중으로 인한 연락 두절로 충원합격 통보가 되지 않을 경우(최대 3회 전화시도) 충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충원합격자 발표일정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본교 홈페이지 및 입학 홈페이지에서 충원발표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시모집 등록확인예치금 납부기한

구 분	발표 및 납부기간	발표방법	납부방법
총원합격자 발표	2018. 1. 3(수) 21:00까지	본교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개별통보	기업은행 및 전국은행
총원합격자 등록	2018. 1. 4(목) 16:00까지		

※ [수시모집] 등록확인예치금 납부 후 최종등록기간 내에 잔여등록금을 납부하여야만 등록이 완료됩니다.

■ 환 불

○ 등록확인예치금 환불

- 환불기간 : 2018. 1. 3(수) 15시까지 (단,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환불 불가)
- 등록예치금을 환불하고자 할 경우엔 인터넷으로 환불신청(환불신청 후 확인전화 필수)
- 환불금액 : 납부한 등록확인예치금액
- 환불 신청 기일경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 등록금 환불

- 환불기간 : 2018. 2. 20(화) 15시까지 (단,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환불 불가)
- 등록금을 환불하고자 할 경우엔 인터넷으로 환불신청(환불신청 후 확인전화 필수)
- 환불금액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름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반환사유 발생일	학기 개시일 전	학기 개시일 후			
		30일 경과 전	30일 경과 ~ 60일 경과 전	60일 경과 ~ 90일 경과 전	90일 경과 후
반환금액	입학금+등록금 전액	등록금의 5/6	등록금의 2/3	등록금의 1/2	반환하지 않음

※ 환불 신청 기일경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 환불신청자는 환불 신청을 한 시점부터 불합격으로 처리하므로 환불신청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합격취소

- 합격자(총원 합격자 포함)가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때에는 합격이 자동 취소됩니다.
-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금지 사항을 위반하여 지원하였을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본교에 입학하여 재학 중이라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합니다.
- 외국고등학교 출신자는 입학 후 학력조회를 실시하여 서류의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하여 재학 중이라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합니다.
- 합격자 중 졸업예정자가 2018년 2월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할 경우, 입학하여 재학 중이라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합니다.

7. 지원 자격

■ 공통학력요건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항에 해당하는 자

1. 외국소재 고교 졸업자
2.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국내 검정고시합격자)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자격구분별 자격요건

자격구분	지원 자격	지원자 학력요건
해외근무자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공무원, 상사직원,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고등학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현지법인·자영업자의 자녀	외국의 현지법인 또는 자영업자의 자녀	
해외선교사 자녀	해외로 파견된 선교사의 자녀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외국의 학교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과정에 상응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북한이탈주민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 공무원의 범위

-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상사직원의 범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사 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설치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점 또는 해외사무소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정부파견의사, 언론기관특파원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범위
 - 외국정부 :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 기업체는 제외)
 - 국제기구 : 정부 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 외국인은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지원문의 : ☎031-450-5183, 5140)
- 해외근무자(공무원, 상사직원,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근무자)의 근무 형식은 **상근직으로 국한**하며 유학, 교육, 연수, 출장 등의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최저 외국 재학·근무·영주·거주·체류 기간

구분	해외근무자 / 현지법인·자영업자 / 해외선교사 자녀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근무/재학	거주	체류	재학	거주	체류	재학	거주	체류
학 생	2	2	2	12	12	12	통일부 확인		
보호자	2	2	2	-	-	-	-	-	-
배우자	-	2	2	-	-	-	-	-	-

- 기간의 계산은 학년(academic year)을 원칙으로 합니다. ‘연속 2년 이상 재학’은 한국 학제를 기준으로 중·고교 과정 총 4개 학기 이상 연속 재학한 것을 의미합니다.
 - 외국학교 간 또는 국내와 외국학교 간에 중복 학기가 발생하였다면, 중복된 학기 중 1개 학기만 외국학교 재학학기로 인정합니다.
 - 학교 간 학제 차이 등으로 인하여 학기의 월반이 발생한 경우, 1개 학기까지만 재학학기로 인정합니다.
- 해외근무자의 ‘보호자’는 부모 중 해외 근무자에 해당합니다.
- 학생의 외국학교 재학·거주(영주)·체류기간 인정기준
 - 해외근무자 자녀 : **보호자의 근무 기간 내의 재학·거주·체류기간만 인정합니다.**
 - 현지법인·자영업자 해외선교사 자녀 : **부·모와 학생이 함께 거주한 기간 내의 재학·체류기간만 인정합니다.**
 - 지원자가 재학기간 중 재학국에 실제 체류하지 않았더라도 방학 등 수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재학국에 체류한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학기(수업기간)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국내에 체류한 기간은 재학국 총 체류기간에서 제외하며, 그 사유를 소명하지 않을 경우 지원 자격 미달로 처리합니다.
- 부모의 외국 근무기간 인정기준
 - **부모의 외국 근무기간은 자녀의 중고등학교 외국 재학기간동안 함께 상근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보호자가 유학, 교육, 연수, 출장 등의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한 기간은 제외합니다.)
 - 외국근무 상사직원의 경우, 해외지사 설치인증 허가되지 않았거나 설치인증 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사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재학기간 : 학년(Academic Year)기준이며,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에 1년의 재학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재학기간은 필요한 경우 학기 단위로도 인정합니다. 단, 해당 학기 수업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재학하여야 합니다.

- 해외근무기간 : 증명서상(재학 및 경력증명서) 해외근무 발령일부터 귀임발령일까지의 기간을 인정합니다.
- 해외거주기간 : 재학 및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상에 기재된 기간을 인정합니다.
- 해외체류기간 : 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을 인정합니다.
- ※ 해외 거주체류 기간은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근무확인서류', '재학기간증명서류'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정합니다.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외국의 전교육과정 이수자는 외국 거주 및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자격을 인정합니다.

■ 지원 자격 심사기준

- 자격인정 기준시점
 - 자격인정 기준시점은 2018년 2월 28일로 합니다. 단, 해당국의 학제 상 학년도가 1개월이 늦은 국가(일본 등)는 1개월의 재학예정기간의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 졸업예정자의 자격인정 기준시점은 고등학교 졸업일까지의 재학기간 내 해당국 거주기간으로 합니다.
- 외국 학교 소재지 인정기준
 - 국가가 아닌 외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하고,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외국 학교는 부모의 근무국(거주국) 내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합니다. 단, 부모 근무국의 지역, 종교, 전쟁, 이데올로기 등 불가피한 경우 보호자의 근무국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제3국 수학인정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제3국 소재 학교의 수학을 인정합니다.
- 외국 재학기간 인정기준
 - 해외 고등학교 과정을 연속 2년 이상 재학했을 경우 특례요건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출입국이 빈번하여 2년 이상 계속 재학하지 아니한 경우는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의 중·고교과정에 재학했을 시 특례요건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학기 중(방학 제외) 출입국이 빈번하여 중·고등학교 과정에 계속하여 재학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지 않으면 지원 자격 미달로 처리합니다.
 - 국내에서 고등학교 2학년 1학기까지 재학하고 2학년 2학기 재학 중에 외국 소재 고등학교에 전·편입학한 경우에는 모든 예외조항에도 불구하고 특례입학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과정 마감(8월 31일) 전에 해당 학교를 자퇴(또는 제적)하고 외국의 학교로 전학(이주)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유급한 기간은 재학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외국고교 졸업예정인 경우 재학기간 산출은 졸업예정일까지로 합니다.
 - 12년 전 교육과정 이수자의 경우, 해외 소재 외국 학교와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를 번갈아 가며 재학하였을 시에는 해외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외국의 학교교육과정 인정기준
 - 외국의 학교과정은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대학과정과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합니다.
 - 초등학교 과정 : 외국의 1 ~ 6학년 과정(Grade1 ~ Grade6)
 - 중 학교 과정 : 외국의 7 ~ 9학년 과정(Grade7 ~ Grade9)
 - 고등학교 과정 : 외국의 10 ~ 12학년 과정(Grade10 ~ Grade12)
 - **외국 학교과정은 해당국 교육관계법령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 학교과정만을 인정하며 유아원, 유치원, 어학연수과정(ESL과정 포함), 대학예비과정, 평생교육기관, 성인대학, 외국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정규 학교과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전·편입학 시 학제 차이로 인하여 12년 전교육과정에서 부족한 교육과정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의 고등학교 졸업 학력인정 기준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1항 제9호
 -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단, 다음의 2가지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고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해당국 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총재학기간이 1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
 - 당해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
 - ※ 초·중·고등학교 학제가 13년제인 국가의 경우, 해당국에서 12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면 초·중·고 전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합니다.
 -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수료한 자
 - 1개 국가의 초·중등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 학년제와 상관없이 마지막 3년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2개국 이상에서 초·중등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년제	인정여부 및 인정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2학년제		
13학년 이상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 부족한 학교교육과정 : 당해국 학년제의 총 이수연수와 교과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의 학력인정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대통령령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교육감에게 설립인가지정을 받은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는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습니다.
- 복수 국적자(이중 국적자)의 국적인정
 - 복수 국적자(이중 국적자)는 국적법 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함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므로 외국인 전형에 지원할 수 없으며,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는 외국인 요건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자격에 부합한 국내 검정고시 출신자는 해당 학교과정 이수자로 인정하나, 해외 검정고시(미국·캐나다의 GED, 중국의 자학교시 등)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의 기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학생의 재학기간 중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이전까지 배우자의 해외 거주 사실을 확인합니다.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 및 양육권과 사실관계를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 자격 및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계산합니다.
- 기타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학칙 및 관련규정,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출서류

구 분	해외 근무자 자녀	현지법인 자영업자의 자녀	해외 선교사 자녀	전교육 과정이수 재외국민	북한이탈 주민 (새터민)
재외국민특별전형 서류심사신청서(소정양식)	○	○	○	○	○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 - 성적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 외국학교의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	○	○	○	○	○ (국내 재학 기간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혹은 호(제)적등본	○	○	○		
출입국사실증명서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학생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제3국 수학인정서	○ 해당자만	○ 해당자만	○ 해당자만		
보호자 직업 관련 증빙서류	○ 19페이지참조	○ 19페이지참조	○ 19페이지참조		
통일부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또는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학력증명서					○

※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Program, 2007.7.14 발효)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가입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는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관련 사이트 주소 : www.0404.go.kr)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가 귀국자 : 협약에 의한 당해(유학했던) 국가 외교부가 발행하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부착한 외국학교의 전 학년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원본 또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재외공관(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한 경유증명을 받은 외국학교의 전 학년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원본 제출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103개국)
- 아포스티유협약 미가입 국가 귀국자 :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재외공관(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한 경유증명을 받은 외국학교의 전 학년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원본 제출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 : 중국, 캐나다, 필리핀 등)

※ **교육과학기술부 승인 재외한국학교(21페이지 참조) 출신자는 '아포스티유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 미제출, 학교장 직인(확인)을 받은 후 제출**

■ 서류제출 유의사항

- 제출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서류 미제출자와 서류심사 결과 지원 자격에 미달되는 지원 자격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되며, 전형로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원 전에 지원 자격 해당여부와 서류제출 가능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해당자)는 서류제출 기간 내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본교 입학팀으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제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도착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에게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제출서류 표(18페이지)의 순서대로 철하여 서류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사본제출이 불가피한 경우, 서류 제출기간 내 원본과 사본을 함께 지참하고 입학팀에 직접 방문하여 원본대조 후 제출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입학 전까지 반드시 모든 제출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는 최근 3개월 내에 발급된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해외발급서류의 경우 해외 재학/근무/거주 종료시점에 발급받은 서류는 유효합니다.
- 한국어,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 공증 받은 한글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해당 거주국의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 고등학교 출신자는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합니다.
- 조기졸업 및 월반 등의 특이사항이 있는 지원자는 해당 학교의 사유서 및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원 자격심사 서류를 접수하여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추가로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시 지원 자격 미달로 불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외국학교 졸업예정자가 최종합격할 경우 2018년 2월 28일 이전까지 졸업증명서를 입학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상의 이름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해당국 법원이나 공관장 발행의 동일인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편배달사고 등 기타 사유로 제출기한 내 도착하지 않을 경우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의 사실 확인에 따라 서류위조 또는 허위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한 후라도 합격(입학)을 취소하며,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된 경우 납부한 등록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보호자 직업에 따른 증빙서류

- 공무원,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외국 근무기간 필히 명기)
- 상사직원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 투자신고(수리)서 또는 해외지사설치(변경·폐지)신고(수리)서 (외국환은행장 또는 지경부장관이 발행)
- 현지법인·자영업자 / 해외선교사 : 보호자 재직증명서(외국 근무경력기간 필히 명기), 외국정부가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자영업자, 회사근무자), 보호자 세금납입증명서(법인세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소득세 납입증명서), 해외선교사 파송 증명서

■ 서류 제출방법 및 제출처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발송
- 제출처 : (435-742) 경기도 군포시 한세로 30 한세대학교 교무입학처 입학팀 재외국민 담당자

※ 입학상담 안내 - 재외국민

- 방문상담 : 본교 본관 309호 교무입학처 입학팀
- 전화상담 : 031-450-5051~4 [팩스 031-450-5362]
- 홈페이지 : ipsi.hansei.ac.kr
- 상담시간 : 오전 9시 ~ 오후 5시

※ 입학상담 안내 - 외국인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 방문상담 : 본교 디자인관 703호 한세국제교류원
- 전화상담 : 031-450-5183, 5140 [팩스 031-450-5014]
- 홈페이지 : www.hsiec.com
- 상담시간 : 오전 9시 ~ 오후 5시

■ 재외 한국학교 현황 : 총 15개국 31개교(2016년 3월 1일 기준)

국가	관할공관	학교명	설립연월일
일본	주일대사관	동 경 한 국 학 교	1954.04.26
		교 토 국 제 학 교	1961.05.11
	주오사카총영사관	오 사 카 금 강 학 교	1961.02.24
		건 국 한 국 학 교	1976.10.01
중국	주중대사관	북 경 한 국 국 제 학 교	1998.08.26
		천 진 한 국 국 제 학 교	2001.03.05
	주상하이총영사관	상 해 한 국 국 제 학 교	1999.07.06
		무 석 한 국 학 교	2006.09.01
		소 주 한 국 학 교	2013.11.28
	주칭따오총영사관	연 대 한 국 학 교	2001.03.05
		칭 다 오 청 운 한 국 학 교	2006.05.30
	주선양총영사관	대 련 한 국 국 제 학 교	2003.12.23
		선 양 한 국 국 제 학 교	2006.07.26
		연 변 한 국 학 교	1998.02.19
주광저우총영사관	광 저 우 한 국 학 교	2014.02.07	
주홍콩총영사관	홍 콩 한 국 국 제 학 교	1988.03.01	
대만	주타이베이대표부	타 이 뻬 이 한 국 학 교	1961.10.01
		까 오 송 한 국 학 교	1961.01.25
베트남	주베트남대사관	하 노 이 한 국 국 제 학 교	2006.03.21
	주호치민총영사관	호 치 민 시 한 국 국 제 학 교	1998.09.01
사우디아라비아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리 야 드 한 국 학 교	1979.04.24
	주젯다총영사관	젯 다 한 국 학 교	1976.09.18
인도네시아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자 카 르 타 한 국 국 제 학 교	1976.01.05
싱가포르	주싱가포르대사관	싱 가 포 르 한 국 국 제 학 교	1993.02.17
태국	주태국대사관	방 록 한 국 국 제 학 교	2002.02.18
필리핀	주필리핀대사관	필 리 핀 한 국 국 제 학 교	2005.07.11
파라과이	주파라과이대사관	파 라 과 이 한 국 학 교	1992.03.01
아르헨티나	주아르헨티나대사관	아 르 헨 티 나 한 국 학 교	1995.01.23
상파울로	주상파울로대사관	브 라 질 한 국 학 교	1998.02.12
러시아	주러시아대사관	모 스 크 바 한 국 학 교	1992.02.14
이란	주이란대사관	테 헤 란 한 국 학 교	1976.04.30
이집트	주이집트대사관	카 이 로 한 국 학 교	1980.04.15

2018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서류심사 신청서

수험번호	지원자격 구분	연락처																						
지원자 수학기 간	학교명 (국내 및 외국, 초·중·고 順)	국내 및 외국 재학기간		학교 소재 국가명	국내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학년, 학기 (■ 표시)																			
		기	간		재학 년수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년	월	~	년	월	년	개월																	
	년	월	~	년	월	년	개월																	
	년	월	~	년	월	년	개월																	
	년	월	~	년	월	년	개월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재학기간	◆ 총 재학기간 : 년 개월		◆ 국내학교 재학기간 : 년 개월		◆ 외국학교 재학기간 : 년 개월																			
교포자녀 기재란	◆ 영주국 :		◆ 영주권 번호 :		◆ 영주권 취득일 :																			
보호자 거주 기간	부(父) 성명	거주(근무) 기간		거주(근무)년수	국가명	모(母) 성명	거주(근무) 기간		거주(근무)년수	국가명														
		년	월	~	년	월	년	개월		년	월	~	년	월	년	개월								
		년	월	~	년	월	년	개월		년	월	~	년	월	년	개월								
		년	월	~	년	월	년	개월		년	월	~	년	월	년	개월								
	교포자녀 기재란	◆ 영주국 :		◆ 영주권 번호 :		◆ 영주권 취득일 :		◆ 영주국 :		◆ 영주권 번호 :		◆ 영주권 취득일 :												
외국 학교 관련 사항	학 교 명 (초·중·고 順)	학교 운영 기간에 관한 사항				연 락 처 (지원시점 현재, 국가번호 및 지역번호 포함)																		
		1학기	2학기	방 학 기 간		주 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월 ~ 월	월 ~ 월	월 ~ 월	월 ~ 월																			
		월 ~ 월	월 ~ 월	월 ~ 월	월 ~ 월																			
		월 ~ 월	월 ~ 월	월 ~ 월	월 ~ 월																			

위 기재내용은 사실임을 서약하며, 만약 허위 기재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합격 이후라도 합격(입학) 취소 등 학교 측의 조치에 승복하겠습니다.

2017년 월 일 지원자 : (인 또는 서명) / 보호자 : (인 또는 서명)